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審查報告書

1992. 7. 20
總務財務委員會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2년 4월 30일
- 다. 상정일자: 제10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7.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가. 제출이유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 기능: 구청장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 위원회 임기: 2년

○ 회의: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3. 전문위원회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현기)

본條例案은 地方財政計劃樹立時, 區廳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한 機構로서 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構成하기 위한 것으로,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가장 큰 當面課題는 財政自立度나 낮은 自治團體의 財政을 여하히 安定的으로 確保하고, 조달된 재원을 적정한 배분을 기해 財政運用의 效率性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懸案 事項임을 중시 할 때, 計劃的인 재정운용과 전전한 재정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동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제정으로 별다른 問題點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구성인원이 15인인데 국장, 실과장등 공무원이 10인이고 一般住民이 5인으로 公務員이 과반수라 실효성이 없다.

○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구정에 민간참여 기회 확대의 첫판문으

로서 초창기에는 운영문제상 公務員이 많이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의원님과 一般人의 參與를 늘리겠음.

○ 질의요지(위원장)

위원회구성 인원중 일반인 5인을 전원 구의회의원으로 위촉 가능한가

○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가능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提出年月日: 1992年4月30日

提出者: 麻浦區廳長

1. 제정이유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

○ 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

○ 위원회 개최:

〔정기회-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임시회-필요시〕

○ 위원회 임기: 2년

3. 제정근거-지방재정법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제정안: 별첨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財政法 第16條

의2의 规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规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機能)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서울特別市麻浦區의 財政計劃樹立에 관한 서울特別市麻浦區廳長(이하 “區廳長”이라 한다)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地方財政 運營 方向에 관한 事項
2. 財源調達에 관한 事項
3. 投資事業 樹立에 관한 事項
4. 기타 區廳長이 부의하는 事項

第3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1인과 副委員長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副區廳長이 되며, 副委員長은 總務局長이 된다.

③委員은 財務局長, 市民局長, 都市整備局長, 建設局長, 監查室長, 總務課長, 財務課長, 稅務1課長, 財政分野에 경험이 풍부한 專門家, 지역대표중에서 區廳長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委員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4條(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고, 委員會의 事務를 통할 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보좌하며, 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會議는 定期會議의 臨時會議로 구분하며 定期會議는 증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臨時會議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개의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委員長이決定한다.

第6條(幹事)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1人을 두되, 幹事는 企劃豫算課長이 된다.

②幹事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

다.

第7條(實務對策班) ①委員會에 上程할 議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意見調整과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項의 處理를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對策班을 둘 수 있다.

② 實務對策班의 構成·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委員長이 정한다.

第8條(審議案件의 配付) 委員會에 부의할案件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會議開催 1주일전에 각 委員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檢討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第9條(關係機關 등에의 協調要請) 委員會 및 實務對策班은 業務修行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部署등에 대하여 資料 및 意見提出등의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第10條(審議錄) 幹事는 委員會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會議開會 日時 및 場所
2. 出席委員 성명
3. 審議事項
4. 審議結果
5.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第11條(手當) 公務員이 아닌 委員이 委員會에 出席할 때에는 豫算의 範圍내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2條(施行規則) 이 條例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부 칙

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